

**도시관리계획(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
3-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**

1. 광진구 자양동 2-6일대 「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3-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진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0월 23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가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

나.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 : 광진구청 도시계획과(☎02-450-7682)

다. 열람내용 :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3-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(안)

1)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 : 변경없음

2)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(안) : 변경

가)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: 변경없음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m ²)	최초결정일	비고
기 정	건대입구 3-3지구 특별계획구역	자양동 2-6일대	5,946.3	2011.12. 8 (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67호)	

나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: 변경없음

다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 : 변경

(1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(2) 건축물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(3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(4)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(5) 준공공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 : 변경

■ 준공공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 : 변경

구분		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	비고
기정	준공공 임대주택	-	오피스텔 연면적의 10% 이상 준공공 임대주택 도입	심의결과 반영
변경	준공공 임대주택	-	오피스텔 연면적의 1% 이상 준공공 임대주택 도입	-

■ 준공공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(변경) 사유서

구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경	- 준공공 임대주택 도입 비율 변경 - 오피스텔 연면적의 10% 이상 → 오피스텔 연면적의 1% 이상	임대시장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주택공급 기능 증진을 위하여 준공공 임대주택의 비율을 조정하고자 함

(6) 3-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사항 : 변경 (생략 : 공람도서참조)

라. 관계도서: 생략(열람장소 비치)

마. 기타사항

-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서울시도시공간포털(<https://urban.seoul.go.kr>) 에서도 확인 및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.
- 본 열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,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전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계획과(☎02-450-768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